사법부검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분석 및 함의
- P 경찰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Criminal Investigators' Recognition of Judicial Autopsy and It's Implications
- With the Case of P Police Station -

박동균*, 최무찬**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포항남부경찰서**

Dong-Kyun Park(police@dhu.ac.kr)*, Mu-Chan Choi(mch112@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수사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인 수사경찰관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의 기회와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부검참관인을 최소화하고, 여성변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외부인의 부검실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요청서' 등으로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시행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변사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수사 후 부검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부검은 유족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사법부검 | 유족의 보호 | 부검의 적정성 | 부검의 신속성 | 부검의 필요성 |

Abstract

Based on the analysis of criminal investigators' recognition of judicial autopsy, this study presented policy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a procedure is needed that optometrists and investigators jointly make previous explanations to bereaved families the status of investigation and the results of examination to their satisfaction and collect their opinion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n agreement to autopsy from them. Second, the dignity of the dead should be kept. To this end, particular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women bodies. Also, we need to minimize the number of autopsy witnesses and obtain agreement from bereaved families when there is an on-the-spot study. Third, we need to establish a guideline that investigators could request a warrant later in certain cases of dead bodies. Also, if a bereaved family positively asks for autopsy, it should be allowed through tentatively named 'Request for Autopsy.' Finally, To make a careful decision on whether an autopsy should be made or not, we can form a joint investigation team of public prosecutors and criminal investigators; however, an autopsy should be done only if it is deemed inevitable, considering the bereaved family's opinion.

■ keyword : | Judicial Autopsy | Bereaved Family Protection | Appropriateness of Autopsy | Quickness of Autopsy | Necessity for Autopsy |

접수번호 : #080923-002
접수일자 : 2008년 09월 23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26일
교신저자 : 박동균, e-mail : police@dhu.ac.kr

I. 서 론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치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국가는 사망에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는지를 가려내어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검이란 국민의 사망에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가려내는 국가적인 배려와 노력이며, 변사체의 사인을 가장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부검의 최대 목적은 억울한 사망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일선 국가기관이 수사경찰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사경찰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현행 부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경북지역의 P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중 현재 수사업무에 종사중인 수사경찰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분석한 이유는 부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생한 실무경험을 기초로 한 수사경찰관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설문지는 2008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91부를 배포하여 최종 73부를 회수하였으며, 문항별로 응답률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답변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법을 실시하였으며,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직 수사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함으로써 표준화된 설문지 조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북지역의 P 경찰서에 근무하는 수사경찰관만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한국의 전체 수사경찰관들의 전체 견해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II. 이론적 고찰

부검(剖檢, autopsy)은 "스스로 보기 위하여(to see for oneself)"라는 뜻이다. 이것에 관한 가장 최초의 기록 가운데 하나는 기원전 44년 Julius Caesar에 대해서 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다[1].

부검은 의사에 의해 수천 년 전부터 이행되어 왔으며, 1247년에 중국 송나라 宋慈가 쓴 洗寃錄(Hsi Yuan Lu)은 모두 5권이며 53항목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외상의 형태와 남겨진 상처로부터 무기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익사하거나 화재로 사망한 경우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하여 묘사하였으며, 1858년 Rudolf Virfchow의 「Cellular pathology」에서 신체조직의 질병에 대하여 현미경 조사를 추가하여 현대 부검방법의 계기가 되었다[2][3].

1. 부검(剖檢, autopsy)의 개념과 목적

부검은 검시(檢屍)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변사체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체의 손괴 없이 시행되는 시체검사행위인 검안(檢案)만으로는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을 절개・채취하는 등 시체를 손괴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검시(檢視)는 검시(檢屍)를 포함하면서 시체와 주변 현장에 대한 조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4]. 즉 부검이란 국민의 죽음에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가려내는 국가적인 배려와 노력이며, 부검의 최대 목적은 억울한 죽음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범죄로 인한 사체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것은 진범을 체포하는데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되어 범인을 체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2. 부검(剖檢, autopsy)의 분류

부검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병리부검(病理剖檢)

질병에 의한 사망이 확실하나 사인이 애매한 경우, 부검을 통하여 사인을 밝히며 이를 토대로 질병의 원인, 경과, 치료효과의 규명 등 의학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검시(檢視)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부검(行政剖檢)

행정법규(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부검으로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나 사인 불명 또는 사망의 종류가 불확실한 사체에 대한 부검으로 공공의 이익에 그 목적이 있다.

3) 사법부검(司法剖檢)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변사체에 대한 부검으로 법의부검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결국 범죄와 사인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사법작용의 공정한 운영에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법부검의 법률적 근거

현행 우리나라 사법부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이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에서 공판절차에서의 부검에 관한 규정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수색・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인 사법부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1) 살인, 강도살인(강도치사), 상해・폭행치사, 강간살인(강간치사), 방화치사 등 중요 강력사건에 기인한 변사사건
(2) 범죄에 기인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인불명 등 부검의 필요가 있는 변사사건
(3) 유족이 사인을 다투는 사건
(4) 사회의 이목을 끄는 변사사건 또는 중요인사에 대한 변사사건

2) 처리 요령

(1) 보고 및 지휘: 변사자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경찰서장에게 변사사건 발생을 보고하고, 경찰서에서는 검사에게 발생 및 지휘건의를 하고 지휘를 받도록 한다[5].
(2) 검시: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는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여 검시를 행하고[6],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의사 등의 참여: 전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의사를 참여하게 하는 외에 검시에 지장이 없는 한 변사자의 가족, 친족, 동거인, 구시군의 공무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 검증: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영장을 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 기타 적당한 감정인에게 사체의 부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7].
(5) 사체 등의 인도: 검시, 부검 등 조사가 끝난 사체 및 소지금품은 발생 신고 접수 24시간 이내에 그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6) 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등을 실시하여 사후에 수사 또는 신원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사법부검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분석

본 연구에서는 P 경찰서의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위이하 전 계급으로, '경사'가 52.1%로 가장 많았고, 재직기간은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69.9%로 가장 많았으며, 부검의 참여회수는 '10회 이내'가 34.2%, '10-50회'가 28.8%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 분	범 주	빈 도(단위 :명, %)
계 급	순 경	3(4.1)
	경 장	22(30.1)
	경 사	38(52.1)
	경 위	10(13.7)
재직기간	1년 이내	2(2.7)
	2-3년	0(0)
	3-5년	3(4.1)

	5-10년	17(23.3)
	10년 이상	51(69.9)
부검 참여 회 수	참여 경험 없음	14(19.2)
	10회 이내	25(34.2)
	10-50회	21(28.8)
	50-100회	7(9.6)
	100회 이상	6(8.2)
근무처	수사지원팀	3(4.1)
	강 력 팀	27(37.0)
	과학수사팀	5(6.8)
	지능경제팀	20(27.4)
	기 타	18(24.7)
합계		73명

1. 부검의 필요성에 관한 수사경찰의 인식

1) 부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수사경찰은 부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 한 결과는 [표 2]와 같은데, '반드시 필요'가 1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5.1%, '필요한 편이다'가 2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4%, '보통이다'가 13명(19.7%), '필요한 때가 있다'가 18명(29.7%), '필요 없다'가 1명(1.5%)으로 부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표 2. 부검의 필요성 여부

구 분	빈 도(명)	비 율(%)
반드시 필요	10	15.1
필요한 편	29	44.0
보통이다	13	19.7
필요한 때가 있다	18	29.7
필요 없다	1	1.5
합 계	71	110

2) 부검결정에 대한 유족의 찬반 정도

수사기관의 부검결정에 대한 유족의 찬반 정도를 질문한 결과는 '매우 찬성'이 0명, '어쩔 수 없어서 찬성'이 3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9.3%, '별다른 의견 없음'이 2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4.8%, '반대'가 8명(11.6%), '매우 반대'가 3명(4.3%)으로 나타나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대부분 부검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검에 대한 유족의 찬반 정도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찬성한다	0	0
어쩔 수 없어서 찬성한다	34	49.3
별다른 의견 없음	24	34.8
반대한다	8	11.6
매우 반대한다	3	4.3
합 계	69	100

3) 검사의 부검지휘에 대한 유족의 반대로 인한 검안

검사의 부검지휘에 대하여 유족의 반대로 검안으로 대치한 경우가 몇 %가 되는지? 질문한 결과 자신이 경험한 부검처리 건수의 '1% 이하'가 2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5.8%, '1-2%'가 1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3.9%, '2-3%'가 15명(22.4%), '3-4%'가 4명(5.8%), '5% 이상'이 8명(12.1%)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수사경찰이 검사의 부검결정에 대하여 유족들의 부검반대로 취소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족의 반대로 검안으로 대치한 경우

구 분	빈 도(명)	비 율(%)
1% 이하	24	35.8
1-2%	16	23.9
2-3%	15	22.4
3-4%	4	5.8
5% 이상	8	12.1
합 계	67	100

2. 유족의 보호측면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1) 부검 시 유족의 수치심 유발

현재 각 부검실에서의 부검은 부검의사 1-2인, 수사종사자 약간 명(사진촬영, 기록요원, 감정물 정리요원, 검시지휘자 등), 부검실 관리원, 경우에 따라서 부검 실습자 다수 등이 부검을 참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체는 완전한 나체 상태로 각종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족이 수치심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즉, '매우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가 5명으로 6.9%,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가 2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7.2%, '보통이다'가 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6.2%, '느끼지 않을 것이다'가 6명(8.3%),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다'가 1명(1.4%)으로 나타나 부검시 유족들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부검으로 인한 유족의 수치심 유발 여부

구 분	빈 도(명)	비율(%)
매우 수치심을 느낄 것	5	6.9
수치심을 느낄 것	29	47.2
보통이다	26	36.2
느끼지 않을 것	6	8.3
전혀 느끼지 않을 것	1	1.4
합계	67	100

2) 유족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부검 당시 유족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는 '생식기 , 유방 등 완전노출 상태'로 부검하는 경우가 3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9.2%, '부검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가 9명으로 14.8%, ' 질내 정액 채취 시 등'이 12명으로 응답자의 19.6%, '공개된 장소에서 부검'이 7명에 11.5%, '기타'가 3명에 4.9%로 나타나 생식기 등을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부검하는 경우 수치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유족의 수치심 유발요인

구 분	빈 도(명)	비 율(%)
생식기, 유방 등 완전노출	30	49.2
참여인원이 너무 많다	9	14.8
질내 정액 등 채취 시	12	19.6
공개된 장소	7	11.5
기 타	3	4.9
합 계	61	100

3) 부검에 있어서 변사자에 대한 예우

범죄수사규칙은 변사체를 처리함에 있어 사자에 대하여 예우를 잃지 않도록 정중하게 취급하고, 현장 보존시 깨끗한 백색 천으로 사체를 덮도록 하는 등 사자의 명예에 훼손이 없도록 하고 있다. 변사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정중하다' 가 2명에 2.8%, '정중하다'가 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6.1%, '보통이다'가 4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8.3%, '무례하다'가 2명에 2.8%, '매우 무례하다'는 0명으로 사자에 대한 명예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변사자에 대한 예의는 정중한가?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정중하다	2	2.8
정중하다	26	36.1
보통이다	42	58.3
무례하다	2	2.8
매우 무례하다	0	0
합계	72	100

4) 부검실의 환경

부검실의 환경은 유족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검실 환경의 쾌적성을 조사한 결과는[표 8]과 같이, '매우 쾌적하다'가 0명, '쾌적하다'가 2명에 2.8%, '보통이다'가 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6.1%, '열악하다'가 3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8.6%, '매우 열악하다'가 9명에 12.5%로 나타나 부검실의 환경은 아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검실의 환경에 대한 의견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쾌적하다	0	0
쾌적하다	2	2.8
보통이다	26	36.1
열악하다	35	48.6
매우 열악하다	9	12.5
합계	72	100

3. 부검 절차의 신속성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1) 변사체 처리과정에서 유족의 경찰기관 출석 회수

사망사건의 유족은 장례를 신속히 치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족이 장례를 신속히 치를 수 있도록 유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줄여 주어 장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족이 변사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경찰관서에 몇 회나 출석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표 9]와 같이 '1회'가 6명에 8.7%, '2회'가 3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6.4%, '3회'가 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6.2%,

'4회'가 4명에 5.8%, '5회'가 2명에 2.9%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3회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변사처리 시 유족의 수사기관 출석회수

구 분	빈 도(명)	비 율(%)
1 회	6	8.7
2 회	32	46.4
3 회	25	36.2
4 회	4	5.8
5회 이상	2	2.9
합 계	69	100

2) 변사체 발견부터 부검종료 까지 소요 시간

형사소송법은 영장을 발부 받아야 부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검의 신속성을 저해하므로 영장이라는 형식을 통하지 않고 부검요청서 내지 부검동의서 등의 별도형식을 통해 부검절차를 간소화하여 영장을 대신하는 제도 등도 논의되고 있다[8]. 변사체의 발견부터 유족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시간을 조사한 결과 '12시간 이내'가 4명에 5.7%, '24시간 이내'가 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7.1%, '36시간 이내'가 2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8.6%, '48시간 이내'가 10명에 14.3%, '48시간 이상'이 3명에 4.3%로 24시간 이상 소요가 57.2%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지연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변사처리의 평균소요 시간

구 분	빈 도(명)	비 율(%)
12시간 이내	4	5.7
24시간 이내	26	37.1
36시간 이내	27	38.6
48시간 이내	10	14.3
48시간 이상	3	4.3
합계	70	100

4. 부검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1) 신중한 부검결정을 위한 합동수사

우리나라는 부검률이 높지 않아 이것이 법의학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9]. 과도한 부검률은 비용의 증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유족의 피해로 이어지고[10], 형식적인 사건 처리로 불필요한 부검이 발생하여 정작 필요한 부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부검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이 검사와 합동수사를 한 경우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반드시 합동수사를 실시한다' 0명, '가급적 하는 편이다'가 8명으로 11.3 %, '보통이다'가 2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8.2%, '가급적 하지 않는 편이다'가 2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9.4%, '전혀 하지 않는다'가 1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1.1%로 나타나 검찰과의 합동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11. 검찰과 합동수사 사례

구 분	빈 도(명)	비 율(%)
반드시 합동수사	0	0
가급적 하는 편이다	8	11.3
보통이다	20	28.2
가급적 하지 않는 편이다	28	39.4
전혀 하지 않는다	15	21.1
합계	71	100

2) 유족 등의 이의제기를 우려한 부검

우리나라에는 검시 대상범위를 명시한 법규가 없어 부검의 시행여부를 판단할 적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11].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한 결과 부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하나, 막연히 타살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명확한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사체부검을 요구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부검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매우 많다'가 2명에 2.8%, '많은 편이다'가 6명에 8.3%, '보통이다'가 3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3.1%, '가끔 있다'가 3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1.7%, '전혀 없다'가 3명에 4.1%로 나타나 사법부검의 목적달성에 불필요한 부검이 상당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수사상 불필요한 부검 사례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많다	2	2.8
많은 편이다	6	8.3
보통이다	31	43.1
가끔 있다	30	41.7
전혀 없다	3	4.1
합계	72	100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부검은 국민의 사망에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가려내는 국가적인 배려와 노력이다. 부검의 최대 목적은 억울한 사망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일선 국가기관이 수사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사경찰의 부검에 대한 인식분석'을 기초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부검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로서, 수사경찰은 부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으나, 유족의 경우는 부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검시결과의 상세한 설명과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검 전에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부검을 결정할 경우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변사처리 기록에 서면으로 작성, 첨부토록 하여 절차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족의 보호문제로 망인에 대한 경외감이 존중되어야 한다. 부검시 유족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로는 여성변사자의 경우 생식기, 유방 등을 완전히 노출한 상태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내 정액 등을 채취하는 경우와 다수의 사람들이 견학을 하는 등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부검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여성변사자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는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은 후에 가능토록 하여야 하고, 부검실의 환경을 장례 예식장 수준으로 쾌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성 확보이다. 변사처리의 평균 소요시간과 유족이 경찰기관에 출석하는 회수를 살펴보면, 시간은 24시간 이상이 62.2%, 출석은 3회 이상 출석이 45%로 나타나 대부분의 유족들이 장례절차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 유족은 신속한 장례를 치를 권리가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변사체 발견보고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사체를 부검한 후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기까지 24시간 내의 처리는 실무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토록 긴급압수·수색·검증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외상 등 범죄에 기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이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동의서' 등을 징구한 후 영장 없이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의 적정성 확보이다. 부검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과도한 부검률은 형식적인 사건의 처리로 불필요한 부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용의 증가, 절차의 지연을 가져와 유족의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신중한 부검의 결정이 필요하다. 경찰의 검시결과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부검지휘를 할 경우, 부검지휘에 앞서 과연 부검이 필요한지 현장에 임장하여 검사와 사경(司警)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임준태, 법과학과 범죄수사, 파주: 21세기사, 2007.

[2] K. Iverson, *Death to dust: What happens to*

dead ?(2nd ed.), Tucson, AZ: Galen Press, Ltd. 2001.

[3] Houck, Max, Siegel, and A. Jay, *Fundamentals of Forensic Science,* Amsterdam ; Baton: Elsevier/ Academic Press, 2006.

[4] 황적준,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연구소, 2003.

[5] 범죄수사규칙 제52조 제1·2항

[6] 범죄수사규칙 제53조 제2항

[7] 범죄수사규칙 제56조 제2항

[8] 곽순기,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관한 법적·제도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p.75, 2004.

[9] 곽정식, 채종민, 최영석, 한길로, 이숭덕, 최상한,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법의학회, 5-62, pp.5-6, 2002.

[10] H. Elizabeth, Death Certification and investigation in England, Wales an Northern Ireland, The Report of Fundamental Review 2003, 영국내무 부(Home office). 2003.

[11] 윤성철, "검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 6, p.122, 2005.

저 자 소 개

박 동 균(Dong-Kyun Park) 정회원

- 1990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1992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1996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행정, 위기관리, 민간경비

최 무 찬(Mu-Chan Choi) 정회원

- 2004년8월 :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법학사)
- 2007년 2월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8년 2월 ~ 현재 : 포항남부경찰서 경무과장

<관심분야> : 경찰행정, 범죄학, 민간경비